

#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5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21.

발 의 자 : 정병용 의원

## 1. 제안 이유

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회사무기구 변경 : 의회사무과 → 의회사무국

나.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변경 : 사무과장(5급) → 사무국장(4급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의회 조례 제 호

##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사무과를”을 “사무국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무과는”을 “사무국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사무과장)”을 “(사무국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회사무과장(이하 “사무과장”)”을 “의회사무국장(이하 “사무국장”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무과장은 지방행정·농지·시설사무관”을 “사무국장은 지방행정·기술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4항 중 “사무과”를 “사무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직무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<u>사무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<u>사무과</u>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제3조(<u>사무과장</u>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<u>의회사무과장</u>(이하 "<u>사무과장</u>"이라 한다)과 사무직원(이하 "<u>직원</u>"이라 한다)을 둔다.</p> <p>② <u>사무과장</u>은 지방행정·녹지·시설<u>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</p> <p>③ <u>사무과장</u>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<u>사무과장</u>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 <p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~ ③</p>	<p>제2조(직무) ① ----- ----- <u>사무국</u>을 ----.</p> <p>② <u>사무국</u>은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<u>사무국장</u>) ① ----- ----- <u>의회사무국장</u> <u>장</u>(이하 "<u>사무국장</u>"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사무국장</u>은 지방행정·기술서 <u>기관</u>-----.</p> <p>③ <u>사무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.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사무국장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~ ③</p>

(생략)

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배치한다.

⑤ (생략)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하남시의회직제규칙으로 정한다.
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사무국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시행규칙) -----  
----- 사무국장-----  
-----  
-----.